

경운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경운대학교 진로교육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발
2. 진로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
3. 핵심역량진단 결과 분석 및 환류
4. 진로지원 성과지표 개발 및 운영 방안
5.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지침 개발
6. 기타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 (기구) 연구소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구성) 연구소에는 소장, 운영위원, 간사를 두며,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연구소장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
- ② 간사는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8조 (연구교수) ① 연구교수는 연구소의 교육·연구 업무에 전념하며, 외부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-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

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
② 연구위원은 경운대학교 재직자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외 저명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0조 (연구원) ① 연구원은 연구소 업무와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보조한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연구보조원) 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
②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12조 (조교)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3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14조 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
4.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 정

제16조 (재정)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, 참여기관출연금, 교내지원금, 연구보조금(연구용역 간접비 포함)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7조 (용역)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제18조 (예산·결산) 연구소 예산의 편성,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행한다.

제19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20조(보고) 경운대학교 부설연구소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21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경운대학교에 귀속된다.

제5장 보 칙

제22조 (해산)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3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